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채권 발행근거 신설 및 기금 재원에의 추가 등 >
■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0호)

2026. 7.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녹색채권 발행 근거 신설 및 기금 재원예의 추가 등	3
※ 참고자료1: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자료	13
※ 참고자료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개요	14

I. 제안경위

2026년 1월 9일 박지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현행 기후 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수입 변동성이 크고,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에 더해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녹색국채 발행 근거 신설 및 기금 재원에의 추가 등

개정안은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기후 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채권을 추가하고, 녹색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의 녹색채권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9조, 제69조의2 및 제7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생략)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제69조의2에 따른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8. · 9. (생략)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69조의2(녹색채권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법 제69조¹⁾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의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기금 수입의 가장 큰 규모²⁾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도 최근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대폭 감소되는 등, 현재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³⁾이 있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2) 2026년 기후대응기금 수입액 2.9조원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1.1조원으로 39.5%를 차지함.

3) 허경선,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 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5.

[기후대응기금 현황(2025.12.기준)]

구분	기후대응기금
구성연도	2022년
누적 조성액	91,006억원
누적 사용액	87,271억원
기금의 주요 용도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기후변화 대응 등 기후 위기·환경보전 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4,849억달러(약 720.6조원)의 녹색채권이 발행⁴⁾되었으며, 발행기관은 정부, 금융기관, 에너지회사 등으로 다양함.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원화 녹색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한국형

4) 「해외 녹색채권 발행통계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12.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정의된 6개 환경 목표⁵⁾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외부검토 및 사후보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자금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차이가 있음.

한국형 녹색채권은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43조 6,098억원 규모로 발행⁶⁾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기업에게 최대 3억원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⁷⁾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 5월, 정부는 프랑스·영국·독일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녹색국채를 발행중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녹색국채 발행 방향을 모색하고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⁸⁾,

개정안은 정부가 이차보전 지원 사업주체에서 벗어나 직접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후대응기금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녹색분야 재원을 보다

5)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가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6) 출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녹색채권 발행현황

7)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 개요]

○ (목적)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 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1.0%(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 (2026년 예산) 8,100백만원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부·민간 합동 녹색국채 발행 방향 모색,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 검토”, 2025.5.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대내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구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에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다변화하고 세수감소·배출권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면서⁹⁾ 개정안에서 규정한 것 외의 내용은 「국채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다른 국채 발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녹색채권의 발행 목적을 명시하고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녹색채권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9)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녹색채권’은 이미 민간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이므로, 혼돈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발행주체가 되는 경우는 ‘녹색국채’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에 녹색채권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 회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녹색채권 자금의 유입·사용·잔액을 명확히 추적·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린워싱 우려를 완화하고 대내외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¹⁰⁾에서 협의가 가능하여 별도의 사전 협의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참고로, 녹색국채 발행·유통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상 예탁원 등록 의무 예외 등 관련 제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박지혜의원안(의안번호 제2215939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 이므로, 이 개정안의 논의 경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의 내용은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 (2026.3.)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된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舊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소위 의결내용]

현 행	박지혜의원안	통합의견(2026.3.)
<신 설>	제69조의2(녹색채권의 발 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 여 기금의 부담으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색채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채 권은 그 발행 목적에 맞 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 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 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부담으로 녹색국 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국 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 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

현행	박지혜의원안	통합의견(2026.3.)
	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u>녹색채권에</u>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u>녹색채권의</u>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u>녹색국채에</u>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u>녹색국채의</u>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u>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생략)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②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u>제69조의2에 따른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u>	8. <u>제68조의3에 따른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u>

현행	박지혜의원안	통합의견(2026.3.)
8.·9. (생략) ③·④ (생략)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④ ~ ⑥ (생략)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u>따른 녹색채권</u>으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u>녹색채권</u>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u>따라 녹색국채</u>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u>녹색국채</u>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536

참고 1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자료(출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1. 한국형 녹색채권 현황

구분	내용
누적 발행기관	총 137개
누적 발행금액	43,609,849백만원
- 상환액	14,999,000백만원
- 상장잔액	28,610,849백만원
누적 발행종목수	487개
- 상환종목수	159개
- 상장종목수	328개
평균표면이자율	3.114%

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참고 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개요

□ 추진배경

-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예산규모) ('26년) 8,100백만원 ※전액 이차보전
- (지원대상) 사업 공모 후 선정된 기업 중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관
 - (선발방식) 최저요건을 갖춘 기업이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으로 신청하면 부문별 선착순(녹색 부문 및 중소·중견기업 우선)
- (지원방식) 참여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 최대 3억원까지 이차보전, (대·공기업) 0.2%p / (중소·중견기업) 1.0%p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사업 공고	기술원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 사업 공고
↓		
② 참여기업 선정	기술원	선착순을 대원칙으로 녹색/전환부문별 참여기업 선정
↓		
③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④ 지원금 지급	기술원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차비용 지원금 지급

□ 추진 성과

- 2023년 25개사가 4조 6,339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024년 27개사가 5조 1,662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025년 37개사가 5조 2,697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